

학회지 편집위원회 규정

2020.07.31. 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사)한국아스팔트 학회 (이하 학회) 정관 제1장의 제4조, 제6장 제23조, 제8장 제28조에 의거 학회에서 발간하는 한국아스팔트학회지의 편집 및 간행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임무, 구성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처리한다.

1. 학회지 편집 계획 수립 및 발간
2. 투고 논문의 심사 및 편집
3. 학회지 논문 투고 사이트의 운영 및 개선

제3조 (구성 및 운영)

1. 위원회는 위원장, 간사(3인 이상) 및 위원(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2. 회의 소집에 따른 제반 비용은 학회에서 지원한다.
3.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자의 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제4조 (위원장 및 위원 선정)

1. 이사회에서 연구 분야, 연구 실적, 경력 등을 심의하여 위원장을 추천하며 회장이 위촉한다.
2. 간사 및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며 회장이 위촉한다. 위원회의 결원이 생길 경우 또는 충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을 추가 선임할 수 있다.
3.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위원장, 간사,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회의)

1. 위원회는 1년에 2회 이상 위원장의 요청 또는 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하며 필요에 따라 서면 또는 온라인(SNS, E-mail, 화상)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2.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3.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4. 회의에서는 다음의 업무를 처리한다.
 - 1) 학회지 발간에 관한 사항

- 2) 논문 심사위원의 선정에 관한 사항
 - 3) 논문 투고규정, 심사규정, 편집규정, 편집위원회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4) 논문게재 여부에 관한 사항
 - 5) 기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5.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업무협의를 위해 학회 임원 및 간사가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제6조 (심사 및 판정)

1. 심사위원은 2주 이내에 심사결과를 편집간사에게 발송하며 편집위원장은 편집간사의 역할을 겸할 수 있다.
2. 1차 심사판정은 '게재가', '수정후게재가', '수정후재심', '게재불가'로 한다. '수정후재심' 또는 '게재불가'의 판정일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3. 심사위원 2인 이상의 '게재가' 또는 '수정후게재가' 판정이 있으면 그 논문은 '게재가'로 확정된다. 심사위원 2인 이상의 '게재불가' 판정이 있으면 '게재불가'로 반송 처리한다.
4. '게재불가'의 판정에 대해 논문 투고자가 이의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의 타당성을 신속히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결과는 편집위원회 명의로 투고자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타당성이 인정받은 경우에는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필요한 경우, 비회원인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6. 상기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처리한다.

제7조 (학회지 발행)

학회지 발행 회수는 연 2회로 하며 발행은 매년 6월,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위원회에서 필요로 할 경우에는 특집호를 발행할 수 있다.

제8조 (기타 사항)

본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또한 이 규정의 개정은 위원회의 발의로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제9조 (규정의 개정, 발효)

본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통해 제정 또는 개정된 날로부터 적용하고 개정 시에는 최종 개정된 내용을 적용한다.

